광주 제석산 호반 힐하임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본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확인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및 재당첨 제한 기간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

구 분	분양권 전매제한	재당첨 제한
전용면적 85㎡ 이하	전매제한 없음	당첨일로부터 3년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111호) 제8조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가 이 규칙 시행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012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이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인터넷 청약안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청약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가입은행 인터넷 뱅킹과 전자공인 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무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관련 규칙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주택공급 명칭 변경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www.hoban-hillheim.co.kr)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버모델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동안 실제 견본주택을 방문해 확인하여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시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l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

■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시간 변경
2009년 4월 1일부터 은행의 영업시간 변경에 따라 인터넷(09:30~16:30 → 09:00~16:00)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시간이 변경(08:30~18:00 → 08:00~17:30)되었으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남구청 건축과 – 25718호 (2011. 08. 16)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24번지외 3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3층, 지상15~20층 11개동 총 68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대지면적 43,281.0㎡ 중 아파트 지분 42,194.6㎡, 상가 지분 1,086.4㎡)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총 687세대 중 특별공급 190세대 포함(일반 특별공급 68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4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68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20세대 포함)

(단위 : 면적=㎡, 금액=원)

구분	아파트타입 및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당 대지지분	층별 구분	공급세대수	공 급 금 액			계 약 금	중 도 금					잔 금 (입주지정일)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그 밖의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대 지 비	건 축 비	계	1회 계약시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2011. 10. 07	2012. 01. 10	2012. 05. 10	2012. 10. 10	2013. 05. 10	2013. 09. 10	2014. 01. 10	
민영주택	2011000732-01	84.9399	84.9399	25.6010	110.5409	54.7612 (54.1196)	165.3021	63.0000	1층	6	58,904,000	162,896,000	221,800,000	11,200,000	11,200,000	22,100,000	22,100,000	22,100,000	22,100,000	22,100,000	66,800,000
									2층	9	58,904,000	167,896,000	226,800,000	11,400,000	11,400,000	22,600,000	22,600,000	22,600,000	22,600,000	22,600,000	68,400,000
									3층	12	58,904,000	172,896,000	231,800,000	11,700,000	11,700,000	23,100,000	23,100,000	23,100,000	23,100,000	23,100,000	69,800,000
									4층	12	58,904,000	177,996,000	236,900,000	11,900,000	11,900,000	23,600,000	23,600,000	23,600,000	23,600,000	23,600,000	71,500,000
									5층	12	58,904,000	182,996,000	241,900,000	12,200,000	12,2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72,900,000
									6층	12	58,904,000	182,996,000	241,900,000	12,200,000	12,2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72,900,000
									7층	12	58,904,000	188,096,000	247,000,000	12,400,000	12,400,000	24,700,000	24,700,000	24,700,000	24,700,000	24,700,000	74,000,000
									8층	12	58,904,000	188,096,000	247,000,000	12,400,000	12,400,000	24,700,000	24,700,000	24,700,000	24,700,000	24,700,000	74,000,000
									7층추	116	58,904,000	193,096,000	252,000,000	12,700,000	12,700,000	25,200,000	25,200,000	25,200,000	25,200,000	25,200,000	75,400,000
									최상층	12	58,904,000	230,896,000	289,800,000	14,600,000	14,6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87,200,000
	2011000732-02	84.9204	84.9204	25.5214	110.4418	54.7496 (54.1071)	165.1904	63.0000	1층	5	58,851,000	160,749,000	219,600,000	11,000,000	11,000,000	21,900,000	21,900,000	21,900,000	21,900,000	21,900,000	66,200,000
									2층	5	58,851,000	166,149,000	225,000,000	11,300,000	11,3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67,400,000
									3층	5	58,851,000	171,549,000	230,400,000	11,600,000	11,6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69,200,000
									4층	5	58,851,000	176,849,000	235,700,000	11,900,000	11,900,000	23,500,000	23,500,000	23,500,000	23,500,000	23,500,000	70,900,000
									5층	5	58,851,000	182,149,000	241,000,000	12,100,000	12,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72,200,000
									6층	5	58,851,000	182,449,000	241,300,000	12,100,000	12,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72,500,000
									7층	5	58,851,000	187,749,000	246,600,000	12,400,000	12,4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74,200,000
									8층	5	58,851,000	187,949,000	246,800,000	12,400,000	12,4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74,400,000
									7층추	51	58,851,000	193,149,000	252,000,000	12,700,000	12,700,000	25,200,000	25,200,000	25,200,000	25,200,000	25,200,000	75,400,000
									최상층	5	58,851,000	230,949,000	289,800,000	14,600,000	14,6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87,200,000
	2011000732-03	84.9477	84.9477	25.4713	110.4190	54.7892 (54.1245)	165.1852	62.8324	1층	15	58,839,000	167,961,000	226,800,000	11,400,000	11,400,000	22,600,000	22,600,000	22,600,000	22,600,000	22,600,000	68,400,000
									2층	18	58,839,000	172,961,000	231,800,000	11,700,000	11,700,000	23,100,000	23,100,000	23,100,000	23,100,000	23,100,000	69,800,000
									3층	20	58,839,000	178,061,000	236,900,000	11,900,000	11,900,000	23,600,000	23,600,000	23,600,000	23,600,000	23,600,000	71,500,000
									4층	20	58,839,000	183,061,000	241,900,000	12,200,000	12,2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72,900,000
									5~6층	40	58,839,000	188,161,000	247,000,000	12,400,000	12,400,000	24,700,000	24,700,000	24,700,000	24,700,000	24,700,000	74,000,000
									7층추가분양	243	58,839,000	193,161,000	252,000,000	12,700,000	12,700,000	25,200,000	25,200,000	25,200,000	25,200,000	25,200,000	75,400,000
									최상층	20	58,839,000	230,961,000	289,800,000	14,600,000	14,6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87,200,000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형별, 층별, 향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 호수를 적용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부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기준 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분양 중도금은 당사가 앞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분양대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함.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발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 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해당 세대가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잔금을 입주일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였으며 이하의 주택형 표기 또한 같음.
- 상기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제세금은 추후 부과되는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정산할 예정임.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는 사항임.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사업자가 정해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자지정 건축물을 피분리하는 선택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에 대한 대출금액 및 분담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며, 연별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첨자 및 계약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됨.
- 당 사업자는 정부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자녀가구군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5%를 특별공급함.
- 당 사업자는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노부부부양자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3%를 특별공급 함.
- 당 사업자는 노부부를 부양하는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노부부부양자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3%를 특별공급 함.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세대 공통사항(보훈대상자 등),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신청 및 당첨자 선정일시 ·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특별공급 신청	2011.08.22(월) (09:00~15:00)	당사 견본주택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2011.08.22(월) (17:00)	

- 신청방법 : 해당 청약신청 일시에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청약신청 하여야 함.
※ 당첨자 선정공고마음식장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 · 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
(동 · 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4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 · 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 · 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일반 특별공급, 제10조 제6항에 해당하는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제10조 제7항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10조 제8항에 해당하는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함.
- 특별공급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제외한다), 제6항, 제7항, 제13항에 의한 특별공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금 총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고, 신청하기 전까지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택하는 분
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다)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 특별공급 우의사항
–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저축 증명서 등의 발급제한 및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 됨.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 부적격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에 해당하는 층 · 호수를 적용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본 주택의 분양 중도금은 당사가 앞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입일자에 맞추어 분양대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만은 임신중인 태아의 자녀수로 산정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개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

평 점 요 소	총 배점	배 점 기 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자녀수 (1)	미성년자녀	40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이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 (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2세대	5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무주택 기 간 (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60㎡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 · 도 거주 기간(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특별시 · 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 · 도로 본다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존 · 재존의 경우 지내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3) :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7항 : 68세대 / 10% 이내)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7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1.08.17)현재 광주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돌입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3조' 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내 입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소득기준

구 분	201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통계청 고시)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4,007,671원 이하	4,447,007원 이하	4,709,765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4,809,205원 이하	5,336,408원 이하	5,651,718원 이하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이하이어 함.(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 자 평균소득의 10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함) (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청 통계청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나)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으로 하되,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20세 이상의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단, 세대원의 질병 · 벌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및소득 확인하고 소득서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금액을 기준으로 함을 근무형숙(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로 나눈 금액으로 함.
라)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부양가족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 · 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 시 임신 중인 경우 태아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가구원수 1명으로 산정)
- 소득입증서류

해 당 자 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 급 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지급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세무부본) –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전 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세직인 날인)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접수창소

- 당첨자 선정방법
– 상기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1)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가)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나)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2순위자로 인정되나, 동일순위 안에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3항 : 20세대 / 3% 이내)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8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청약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직상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함(견본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5)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일반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1.08.17)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 (용도: 주택공급 신청용)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인정서만 인정함(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 단독세대 및 배우자 분리세대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1.08.17)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정기준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청약통장순위기입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 · 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 (용도: 주택공급 신청용) • 인감도장 • 무주택서약서(청소장소에 비치) • 미성무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만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1.08.17)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당해 시 · 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임)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 무주택서약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 확인을 위함)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지정 받고자 하는 수도권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으로 입증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지참, 의료보험증 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소득기준 증빙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도 첨구)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1.08.17)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 (용도: 주택공급 신청용)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부양기간이 5년이상 되었음이 확인되는 것)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1.08.17)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하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2. 일반공급
◉ 공통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1.08.17)현재 광주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20세 이상인 재외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등임.
• 신청자격 : 해당 청약신청 일시에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청약신청 하여야 함.
※ 당첨자 선정공고마음식장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 · 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
(동 · 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4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 · 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 · 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일반 특별공급, 제10조 제6항에 해당하는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제10조 제7항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10조 제8항에 해당하는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함.
• 특별공급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제외한다), 제6항, 제7항, 제13항에 의한 특별공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금 총액이 지역별 예치금